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0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정재완, 최길림, 최희원, 김용준, 김나영

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F

2. 유한회사 G

3. 주식회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정노, 임채웅, 최고은

판 결 선 고 2023. 8. 1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나20090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가 유한회사 T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우선수익자 지위를 이전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S으로부터 몰취한 위약금 중 일부를 O에 배당정산한 것을 이 사건 합의 제2조 제11항에서 정한 'O이 공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의 요청에 기하여 피고 F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1순위 우선수익자 O이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4순위 근질권자 R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F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의 요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F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염가로 책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우선수익권 양도의 효력 발생요건, 물권법정주의와 민법 제352조에서 정한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